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841호)

2023.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3. 9. 27.

다. 회 부 일 : 2023.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진선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제49조) ☐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한도 적용 - 대기업: 1억원 - <u>중소기업: 5천만원</u> -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시: 한도 없음	☐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 하향 조정 - (현행과 같음) - <u>중기업: 5천만원, 소기업 1천만원</u> - (현행과 같음)

* 진선미의원안 2023. 9. 27. 발의(의안번호 24841)

- ☐ 개정안은 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일부 가산세 등에 대해서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의 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음.
-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임¹⁾.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위반행위의 건별로 부과하게 되며, 부과시에는 위반된 세목의 산출세액이나 공급가액 등의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을시 아무런 제한 없이 누적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다보면 제재효

1)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6745 판결

과를 초과하여 비례성원칙에 반하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큼.

이를 감안하여 「국세기본법」은 가산세의 본질에 충실한 제재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되, 너무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산세의 한도를 두고 있음.

- 고의성 없는 세법상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여 위반 정도에 비하여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협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

세법	가산세의 종류	관련조문
소득 세법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제81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6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1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1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81조의13
법인 세법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미발급, 가공·허위발급은 제외)	제75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75조의9

세법	가산세의 종류	관련조문
부가 가치 세법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제60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미발급, 가공·허위발급수취분 제외)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상증 세법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제78조
	공익법인 세무확인 보고의무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미신고가산세	
조세 특례 제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30조의5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제90조의2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세목	적용기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상속세 증여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조세특례 제한법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 세금우대자료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 없이 가산세 한도를 동일하게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

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소기업의 가산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세 행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가산세 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성실납세에 역행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²⁾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려는 개정안(2023.9.1. 정부 제출)이 제출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 의결시 소기업에 일부 가산세 한도 혜택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는 조문 전부에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 있어 법인의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포함)은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2)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채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 3.~5. (생략)

['가산세 한도의 적용' 관련 현행 및 개정안]

현행	진선미의원안	정부안
중기업 한도 5천만원, 대기업 한도 1억원	소기업 한도 1천만원 중기업 한도 5천만원 대기업 한도 1억원	현행과 동일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포함)에 가산세 한도 미적용	현행과 동일	법인세 지연발급에 가산세 한도 적용

문 의 처

02)6788-5160